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자원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생긴 게 2005년이네요.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무려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는 사실도요.

그러다 드디어, **2026년 4월 23일** —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법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꽤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언어 대신, 핵심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

## 먼저, 왜 지금 바꿨을까요?

---

2005년에 처음 법이 만들어질 당시엔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이제 막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법의 목적도 "일단 기본 틀을 만들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자" 정도였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봉사가 일상이 됐고,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이웃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열고, SNS에서 재능을 나누는 것도 이제 당연한 봉사 활동이고요.

그런데 법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계, 국회, 정부가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거예요. 2024년부터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2025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2026년 4월에 드디어 통과시킨 결과물입니다.

# 1

## 법 이름부터 달라졌어요

기존	개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단순히 이름을 줄인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표현에는 봉사를 개인의 작은 선행, 하나의 활동 정도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반면 '자원봉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모두의 사회 시스템"으로 재정립 — 개인의 선한 마음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할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법 본문 전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표현이 '자원봉사'로 통일된 것도 이 흐름과 같아요.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 서식들도 하나씩 정비될 거예요.

# 2

## '국민'에서 '개인'으로, 모두를 위한 자원봉사

기존 주체	개정 주체
국민	개인

한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꽤 커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엔 국적은 달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아요. 이주민,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번 개정으로 '개인'으로 바뀌면서,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의 주체가 됩니다.

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 항목도 새로 추가됐어요.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에 이어 인종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참 필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3

### 온라인 자원봉사, 이제 공식으로 인정받아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봉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온라인 멘토링, 원격 교육 지원, 콘텐츠 제작, SNS 캠페인, 영상 번역 자원봉사 등 —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존 법에는 이런 온라인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책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공식 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기도 애매한 경우가 생겼죠.

#### 제8조 ②항 신설

자원봉사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즉 온라인 자원봉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앞으로 1365 자원봉사포털 같은 시스템의 분류 체계가 개편되고, 온라인 봉사에 대한 정책 지원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이 더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어지는 거고요.

4

### 자원봉사자의 인권,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기존 법에서 자원봉사자 보호라고 하면 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험 가입' 수준이었어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꼭 사고만은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러 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차별적 발언을 듣는다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 제16조 ③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이제 자원봉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이 됩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공공의 역할이 된 거예요. 앞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안전·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교육 내용도 달라질 거예요.

## 그 외에도 달라지는 것들

이 네 가지 외에도 꽤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 ▣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 신설 (제18조)

전국 수백 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이 드디어 법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 관리자를 공식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근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원칙화

기존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도 허용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전환해야 해요.

### ▣ 1365 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마련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이제 법에 명시됩니다. 2026년 1월엔 1365 포털 기반 자원봉사 현황이 국가통계로도 승인됐어요.

### ▣ 지역 단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그동안 국가 단위만 있던 위원회가 지역 단위에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 마무리하며 — 법이 바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법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현장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

난 날부터 시행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또 구체화돼야 하거든요.

하지만 법이 바뀐다는 건 사회가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예요. 온라인 봉사도 진짜 봉사다, 자원봉사자의 인권도 국가가 지켜야 한다, 자원봉사 관리자도 전문 직업이다 —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안에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왜 이게 아직도 법에 없지?" 싶었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를 직접 하고 계신 분이든, 관리하고 지원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든 — 이번 변화가 우리 모두의 자원봉사 현장을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전문적이고, 더 존중받는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발행한 해설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